의 안 번 호	제275호
의결연월일	2020. 12. 08.

-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❍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0. 11. 6. 정완진, 김태금, 강선구 의원

❍ 회 부 일 자: 2020. 11. 18. 의회운영위원회

❍ 상 정 일 자: 2020. 11. 25.

제266회 예산군의회(정례회)
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(대표 발의자 : 정완진 의원)

가. 개정이유

○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연구모임이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연구모임이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(안 제8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: 양필모)

❍ 본 조례안은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의 보다 활발한 활동과 객관적 근거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연구모임이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**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**으로 판단됨.

4. 질의·답변 요지

❍ 생　　략

5. 토 론 요 지

❍ 없　　음

6. 심 사 결 과

❍ **「원안가결」**

7. 소수의견 요지

❍ 없　　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❍ 없　　음